

# 石油流通系列化와 公正去來法



朴 炳元

〈經濟企副院公正去來室·行政事務官〉

## I. 導 入

금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우리 경제의 운용방식의 전환의 일환으로서 볼 때 비로소 그 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수입제한 등의 보호와 금융, 세제 등의 지원에 의하여 우리 경제를 키워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히 기존 업체를 보호하는 경쟁제한적 제도와慣行이累積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規模가 擴大됨과 동시에 複雜性이 增大함에 따라서 정부의統制와 指導로 효율적인 經濟運用을 기할 수 없게 되고, 企業家와 消費者가 共히 政府依存의이고 競爭忌避의인 思考방식에 젖어 들므로 인하여 經濟活力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던 중, 第2次 石油危機와 政治·社會的 불안을 맞자 심각한 경제적 후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難局을 극복하고 第2의 經濟跳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도 公正한 경쟁에 의하여 國民個人的 創意的 노력을 極大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金融의 自律化·民營化, 財政·金融緊縮에 의한 安定成長 政策追求, 輸入의 漸進的 開放, 租稅減免의 縮小를 비롯한 稅制改革 등과 그 軌를 같이 하여, 이와 같은 經濟運用方式의 轉換의 일환으로서 公正去來法이 제정·시행된 것이다.

公正去來法의 根本理念이 “公正하고도 自由로운 競爭”이라는 관점에서 独占規制와 競爭促進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의 제한은 주로 獨寡占·共同行爲 등에 의하여 행해지므

로 公正去來法도 이와 같은 경쟁제한적 행위의 禁止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不公正去來行爲도 不正한 수단에 의한 競爭行爲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행위를 꼭 같은 比重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競爭의 制限은 私인에 의한 것과 政府에 의한 制度的 制限이 있는데 前者의 경우는 生産業者가 그 판매업자를 系列化·組織化하면서 계열내 판매업자들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地域分離, 再販賣價格維持行爲 등이 그 예이며, 後者の 경우는 정부의 許可制에 의한 新規參入의 制限, 價格統制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不正한 수단에 의한 경쟁행위의 예로서는 최고기 통조림이라고 표시하고 馬肉을 混入하는 등 不當表示나 虛偽誇張廣告 등이 이에 해당한다. 不正競爭手段의 사용은 예외없이 禁止되지만 경쟁의 제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 國民經濟의 觀點에서 보아 경쟁을 促進하는 것보다 제한하는 것이 더 妥當할 때에는 許容된다. 대표적인 예가 電氣, 水道, 鐵道, 通信 등의 公的 独占이며, 重要 物資에 대한 價格統制 등도 그 예이다. 물론 私인에 의한 경쟁제한의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허용된다.

公正去來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對策이 궁할 때가 “政府에 의한(法술에 의한) 보다 根本的인 경쟁제한이 尙存하는 마당에 왜 事業者에 의한 微微한 경쟁제한행위를 가지고 問題삼느냐”라는 抗弁에 부딪힐 때이다. 물론 政府에 의한 경쟁제한은 公益을 위한 正當한 것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幼稚産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해서 正當화할 수 있었던, 또는 단

순히 行政便宜를 위해서 마련된 각종의 競爭制限의 제도가 既得權의 抵抗 등의 이유로 인하여 適時에 整理되지 못하고 旧態依然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法令整備 및 政府機構의 축소 등의 광범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各種의 競爭制限의 法令에 대해서는 公正去來法과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公正去來法 適用除外 法令의 指定을 위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公正去來法 施行 이전에 또는 동시에 이러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民間에게 먼저 是正을 요구하기에 몇몇하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다.

이번 石油流通協會 對 精油5社 事件의 처리가 3個月이나 걸린 것도 精油段階에 대한 油政上(石油事業法上)의 각종의 競爭制限이 尚存하는 상황에서 流通段階의 競爭活性化가 어느 정도까지 可能한가 또는 妥當한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結論은 油政上의 拘束의 必要性和 公正去來法이 요구하는 私企業의 經營성의 自由確保의 必要성이 妥協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油類需給의 安定은 經濟의 문제를 넘어서 國家安保의 관점에서 焦眉의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II. 流通系列化와 公正去來法

### 가. 流通系列化의 定義

流通系列化는 製造業者가 자기의 상품 또는 用役을 販賣함에 있어서 販賣業者의 協力을 확보하고, 그 판매에 관하여 自己의 정책을 容易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販賣業者를 掌握하고 組織化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現在 우리나라의 流通構造는 주요 工產品의 경우 대부분 數個業體 이내의 寡占業體가 特約販賣網을 구축하고 있어 強弱의 차이는 없으나, 거의 모든 業種의 流通이 系列化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近代의 産業이 발달된 流通産業의 기초위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政府의 經濟開發計劃에 따라 육성된 製造業者가 그때 그때 販賣網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歷史的인 背景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流通産業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가장 落後된 産業에 속한다. 이러한 流通系列化가 특히 競爭制限의 慣行 또는 優越의 地位의 濫用을 많이 수반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供給不足狀態가 계속되어 特約販賣權이 利權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流通系列化의 評價

그러나 이러한 流通系列化는 상당한 長點과 短點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長點으로는 ① 유통과정에서 있어서의 社會的 分業의 促進, ② 流通經路의 整理, 短縮, 대량수송 및 交叉輸送防止, 在庫管理의 합리화 등에 의한 流通코스트의 節減, ③ 商品情報, 소비자 욕구의 변화 등 情報의 효율적 傳達, ④ 計劃生産, 販賣, ⑤ 專門의 知識·經驗에 의한 販促 및 アフター서비스, 品質管理의 충실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同時에 流通系列化는 판매업자의 經營合理化 및 多角의 발전을 저해하는 弊害를 낳는다. 즉 ① 판매업자간의 경쟁이 制限되어 價格이 硬直化되고, 價格水準 維持의 수단이 되며, ② 新規參入에 대한 장벽이 되는 수가 많고, ③ 판매업자가 自主성을 잃고 經營合理化에 소극적이게 되며, ④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에 支配·從屬關係가 발생 또는 강화되어 제조업자에 의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용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 消費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격수준의 維持·硬直化, 한 판매업소에서 충분한 상품정보와 選擇機會를 제공받을 수 없는 등의 불편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流通系列化의 장점과 단점은 密接不可分の 것은 아니다. 流通系列化의 長點은 流通産業 자체의 발전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流通系列化에 있어서의 不公正 去來行爲를 다룰 때에는 代替possible한 수단이 없는가 與否를 正當한 事由의 有無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不公正去來行爲는 形式的要件(行爲類型)과 實質的 要件(正當한 事由의 有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正當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유형의 행위가 도움

□ 特輯：石油流通과 公正去來法

이 된다는 정도로는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目的 달성의 必要性, 正當性和 함께, 당해 行爲 이외의 方法으로는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음을 證明하여야만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石油販賣業의 系列化에 있어서 나타난 公正去來法 違反行爲

〈表 1〉 石油類販賣代理店契約上の 問題條項

違反事項	油公	湖油	京仁	双龍	極東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	○	○	○	○	
2. 不當排他條件附去來	○	○	○	○	
3. 不當拘束條件附去來					
—地域制限	○	○	○	○	○
—販賣網新設事前承認	○	○	○	○	
—代理店의 營業上 自由拘束	○			○	
4. 優越的 地位의 濫用					
—白紙어음의 差入	○	△		○	
—販賣網廢止事前承認	○	○	○	○	
—物的設備의 讓渡制限	○			○	
—債務負擔, 合併等事前同意	○			○	
—休廢業 事前承認	○			○	
—購買義務量 未達時 損害賠償額 予定	○				
—一方의 解釋權	○	○		○	

〈表 2〉 日本의 石油元売 13個社의 特約契約內容

項目名	內容	實施社數
1. 價格·數量 決定	—元売社가 數量, 引渡條件, 價格去來限度 등 결정	7
2. 他社製品取扱禁止	—實際拘束力 없음	3
3. 自社商標에 의한 他社製品販賣禁止		4
4. 品質·商標의 變更禁止	—他社製品과 混合금지 —他社에 轉賣금지	7
5. 販賣區域指定	—單位로 複數事業者存 在하므로  경쟁충분함	9
6. 催告없는 一方解約	—重大事由發生時	11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

再販賣價格維持行爲란 유통과정의 上流에 있는 事業者가 下流에 있는 사업자에게 商品을 販賣함에 있어서, 後者가 前者가 공급한 商品을

다시 팔 때의 價格을 拘束하는 行爲를 말하는데 製造業者가 都·小売價格, 都売業者가 小売價格을 지정·구속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再販賣價格維持行爲는 著作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法20條) 一定한 要件에 適合한 경우에는 經濟企副院長官의 指定을 받아서 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外國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에 대한 예외는 縮小시켜나가는 경향이고 심지어는 著作物에 대해서도 許容치 않는 나라가 많으며, 經濟企副院의 方針도 加급적 許容치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므로 指定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체로 製造業者는 流通段階에서의 價格競爭이 激化되지 않고, 자신의 價格政策이 유통단계에서 충실히 이행되기를 원한다. 自己製品 판매업자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價格引下는 경쟁상대방 제조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의 응수를 초래하여 결국 製造業者間的 價格競爭으로 飛火되기 쉬울 뿐 아니라, 판매업자의 마진이 縮小되면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價格引下의 압력을 가하여 오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供給不足狀態가 오래 계속되는 동안 정부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同一한 價格”을 維持(抑制)하는 데 主力해 왔으므로 사업자나 소비자나 모두 “同一한 價格”을 公正한 去來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再販賣維持禁止는 많은 誤解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個別事業者의 가장 유력한 競爭手段인 價格決定의 自由를 확보해 주어 價格競爭을 促進하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목적이다. 最高價格을 정해주는 정도라면 制度의 趣旨과 背馳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여하한 형태이든 다른 事業者의 價格決定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通說이다. 事業者들 상호간에 販賣價格을 協約하는 것도 經濟企副院에 事前審査를 得하여 登錄証을 交付받지 않으면 역시 共同行爲에 관한 法規定에 저촉되어 違法이다. 자기가 파는 價格은 오로지 자기가 스스로 獨自의 으로 定하는 것이 法의 취지이다.

價格表示制와의 關係가 혼히 混亂을 일으키는 모양인데, 이는 “自己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

기의 販賣 價格을 表示하고 그 價格으로 판매하  
라”는 것이므로 再販과는 다르다. 메이커에 의  
한 小売價格表示(家電製品, 藥品의 例)도 그것  
이 단순히 購買者에게 價格情報를 제공하는 것  
인 한도에서는 無妨하나, 판매업자에게 그 가  
격에 팔 것을 强요하는 경우에는 違법이 됨을  
먼치 못한다.

石油流通事件에 있어서는 실제로 精油業者가  
代理店의 販賣價格을 拘束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으나, 契約書내용에 關係條項이 있어 是正  
命令 對象에 포함되었다. 代理店도 注油所의  
판매가격을 간섭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 IV. 不当排他条件附去來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 第10号는 “ 正当한  
理由없이 自己의 競争者에게 商品 또는 用役을  
供給하지 아니하거나 自己의 競争者로부터 商  
品 또는 用役의 供給을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  
으로 하여 당해 相對方과 거래하는 行爲”로 不  
当排他條件附去來를 규정하고 있다.

精油会社가 대리점과의 去來條件 중에 所要  
全量을 自社로부터 購買하고 他社로부터 供給  
받지 말 것을 規정한 것은 “또는” 이하의 行爲  
類型에 꼭 들어 맞는 것이므로 型式的 要件을  
충족함은 論難의 余地가 없다.

最近 外國의 學說은 排他條件附去來라 할지  
라도 그로 인하여 流通過程에서의 重大한 경쟁  
제한이 초래되지 않는 한 正当한 사유의 有無  
를 가릴 필요도 없이 불공정거래 行爲가 되지 않  
는다고 보고 있다. 즉 有力事業者가 專賣店制  
를 실시하는 경우와 專賣店制度로 인하여 流通  
經路의 主要부분이 廢鎖的 狀態에 놓이게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배타조건부거래를 적용한다  
는 것이다. 예컨대 10여개의 製造業체가 경쟁  
하고 있는 업계에서 市場店有率이 낮은 두세개  
업체가 專賣店制를 採択함으로써 市場의 10~  
20%정도가 廢鎖的 狀態에 놓여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排他條件附去來를 문제삼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일 이번 事案  
이 專賣店制의 撤廢로 結論이 났다면 그 대상  
에 京仁·雙龍·極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을 것  
이다. 그러나 本件의 경우 有力業체가 排他條  
件附去來를 하고 있는 流通의 거의 100%가 폐  
쇄적 狀態에 있었으므로 이 점은 別로 論議되지  
않고 “正当한 事由”의 有無에 檢討가 집중되었  
다. 精油業界에서 내세운 事由와 이에 대한 판  
단을 略述하고자 한다.

1) 品質管理 및 販促活動上 필요하다는 主張  
에 대해서: 石油類의 性格上 製造業체間의 有  
效한 品質·價格競爭을 위해서는 注油所 단계에  
서, 예컨대 “油公의 풀·사인을 걸어 놓고 他社  
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구속을 할 必要  
性이 強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 구속은 排他  
條件附去來와는 명백히 다르다. 50정도의 구속  
의 必要性이 100의 구속을 正当化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注油所라고 해서 別도의 貯藏·注油  
設備를 갖추고 區酬을 하여 한쪽에서는 油公의  
풀·사인下에 油公製품을, 다른 한쪽에서는 湖  
油의 풀·사인下에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余地를 封鎖할 이유는 없다. 또 注油所 또는 大  
量需要者의 주문에 의하여 油槽車를 配車하여  
精油社로부터 油類를 받아 배달하는 기능을 하  
면서 外上賣出債權 등 信用供與와 管理上의 危  
險負擔을 緩衝하는 역할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  
는데 불과한 代理店에 대해서는 더구나 正当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京仁의 製品을 운송하는  
油槽車에는 반드시 京仁의 마크를 부착하라는  
구속은 좀 미심스럽기는 하지만,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므로 加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日  
本의 경우, 代理店은 併売店이 10% 정도인데  
만하여 注油所는 1%미만이라고 하는데, 複數  
去來를 허용하면서 混合取扱을 禁하면 자연  
적으로 이러한 狀態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添言할 것은 注油所에서  
풀·사인과 다른 내용의 油類를 파는 것은 精油  
社, 代理店과의 契約上 義務를 떠나서 라도 不公  
正去來行爲指定告示 第7号의 不当表示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資金支援 등과 對價關係에 있다는 主張  
에 대해서: 精油会社가 代理店에 대해서 또는  
代理店이 注油所나 大量需要者에 대하여 低利

의 資金供與 등의 지원을 베풀고 있으며 이러한 支援은 계속적 去來關係를 유지한다는 前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長期間의 排他條件附去來를 正當化한다고 볼 수는 없다. 製造業者가 販賣業者에 對해서 經營指導, 資金支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當연한 販促活動의 一環에 不過하며 去來條件에 關한 競爭의 한 형태이므로 有利한 條件을 제시함으로써 顧客을 誘引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有利한 條件을 제시하는 去來相對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契約을 맺은 이상 長期間 拘束되어 있으라고 강요할 理由로서는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去來의 附帶條件的인 이러한 利益을 제공하여 顧客을 자기에게 誘引하는 자체가 過度되면 不當한 顧客誘引이 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利益의 供與도 競爭의 한 형태이며 간접적으로는 價格競爭의 效果를 일부 가지고 있으나, 公正去來法은 能率向上을 위한 노력을 直接的으로 刺戟할 수 있는 品質과 價格의 競爭에 경쟁의 軸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이외의 方法에 의한 경쟁이 激化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變칙적인 경쟁수단에 強度의 拘束力까지 부여하는 것은 더구나 適合치 않다고 생각된다.

3) 政府의 販賣業所可制度가 專賣店制를 前제로 하고 있다는 主張에 對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法令의 規制가 競爭制限의 根源이 되고 있음은 本件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石油事業法 第8條 1項에서 석유류판매업 허가시 精油社의 供給契約書寫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2個 以上 精油社의 공급계약서를 붙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動力資源部도 石油事業法上으로는 排他條件附去來를 要求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市道知事의 販賣業許可基準告示인데, 石油類販賣業許可權의 利權化防止 등을 위한 今年 3月 13日 動力資源部의 販賣業許可의 擴大·自由化의 趣旨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11個 市道中 忠北과 京畿만이 定數를 두지 않고 完全自由化 하였을 뿐이며, 慶

北, 江原, 全南北, 濟州는 地域別定數를, 서울, 釜山은 정유회사別 定數를, 慶南·忠南은 여전히 精油会社別·地域別定數制度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4個道가 代理店·注油所가 정유회사별로 系列化되어 있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물론 本件에서 精油社의 배타조건부거래를 1年單位로 나마 許容한 것은 이와 같은 허가제도상의 문제때문은 아니다. 이와 같이 정유회사별로 판매업자를 구속하는 것이 法上 근거는 없다는 것이 主務部處의 의견이고 보면 市道知事의 許可基準告示는 마땅히 公正去來“法”에 맞추어 是正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는 精油会社側이 몇가지 理由를 提起하였으나 紙面관계도 있고 하여 省略하고, 마지막으로

4) 石油需給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主張에 對하여: 현재 原油는 대부분이 1年 정도의 장기契約에 의하여 導入하여, 契約量을 導入하지 않을 때는 罰課金을 물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쿠웨이트의 경우 未導入量의 10%에 해당하는 金額을 물게 되어 있다고 한다.) 將次의 원유도입계약에 큰 支障을 초래하게 된다. 또 일단 確保된 原油가 精油社의 販賣網의 動擾로 인하여 滯貨된다면 막대한 資金負擔으로 인하여 精油社의 經營上 不實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石油類 價格體系가 精油社의 마진은 輕質油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어 있는데, 代理店이 輕質油市場의 65%(一般代理店 50%)를 占有하고 있으므로 販賣網의 動擾는 精油社의 經營困難과 이로 인한 油類需給上의 상당한 支障을 초래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石油需給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排他條件附去來의 기간을 最小限度로 단축시킨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에 對해서 主務部處의 의견을 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론이 1年單位의 排他條件附去來를 유지하는 것은 正當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된 것이다.

## V. 不當拘束條件附去來

不當拘束條件附去來에 對해서 指定告示 第11

호는 “正當한 이유없이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拘束條件을 붙여 當該相對方과 去來하는 行爲

가) 去來相對方에게 尙金 또는 용역을 供給하는 者와의 去來關係를 구속하는 경우.

나) 거래상대상으로 하여금 자기의 商品 또는 用役을 供給함에 있어 販賣地域, 販賣相對方 等의 去來關係를 구속하는 경우

다) 去來相對方과 경쟁관계에 있는 者와의 去來關係를 구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本件의 경우 위의 3호중 “나”호에 해당 됨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리점의 販賣地域制限은 물론, 注油所·副販店 등 판매망의 新設에 事件承認을 要求하는 것과, 油公과 雙龍에 국한된 것으로서 注油所와의 去來關係를 일정한 內容으로 할 것을 要求하는 것 등은 代理店과 注油所의 “거래관계”를 구속하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精油社 등이 스스로 是正할 뜻을 밝혔으므로 그다지 論議되지 않았다. 유사한 內容이더라도 代理店과 注油所 등의 “去來關係”에 관한 구속이 아니고 代理店 自体에 가하여진 各號의 一方的 구속은 그 適用法條가 優越的地位의 濫用(告示 第9号)으로 되었음을 添記하고 싶다.

不當拘束條件附去來와 優越的地位濫用に 관한 일반적인 설명 역시 紙面의 제약으로 省略하는 바, 昨今 商工会議所에서 나오는 商議週報에 不公正去來行爲에 관한 拙稿를 연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 VI. 優越的地位의 濫用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 第9号는 “事業者間의 去來에 있어서 自己의 去來上의 지위가 優越함을 이용하여 正當한 이유없이 正常的인 去來慣行에 비추어 不利益한 條件으로 당해 相對方과 去來하는 行爲”라고 규정하고 있다. 本号는 ① 事業者間의 去來에만 적용되고, ② 去來上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与否, ③ 正當한 事由의 有無, ④ 正常的인 去來慣行의 內容, ⑤ 不利益한 조건으로 去來하였는지 与否를 일일이 檢討·立証해야 하므로 適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尙

인내도 불구하고 精油各社가 修正에 同意하였으므로 이러한 檢討 없이 是正命令에 포함시켰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是正勸告의 形式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우월적위치의 남용으로 지적된 것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白地어음의 差入인데, 債權을 担保하기 위하여 迅速한 決濟手段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받아두는 白地어음까지 포함한 支給期日 空欄의 銀行渡 白地어음 差入制度 一般을 違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해두고자 한다. 本件의 경우 그 백지어음이 既存의 確定債務를 担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契約不履行으로 인하여 發生可能한 損害賠償債務를 担保하는 것이라고 볼 때 契約內容中에 포함되어 있는 違法的 條項의 遵守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發生可能한 損害額과 어음金額이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는 점, 不渡処分 및 刑事処罰의 可能性으로 일반적 支配權行使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월적지위의 남용이 된다고 본 것이다.

油公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지만 購買義務量未達時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契約內容역시 損害賠償額의 予定 自体는 문제가 없으나 구매의무량을 부과한 점 때문에 不當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위 契約內容이 實效性있게 履行되고 있었으면 그 自体가 不當한 去來強制(指定告示 第8号)가 됨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나, 실제 행해지고 있지 않으므로 契約書內容의 修正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契約內容에 異議가 발생했을 때 一方的 해석권을 가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法廷에서 無效인 條項을 是正對象으로 삼느냐는 異論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法律知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尙항이 事實상의 拘束力을 가질 可能性이 있으므로 계약내용에서 삭제토록 하였다. 기타 精油社에 의한 事前同意를 要求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事前通知로 修正토록 하였다.

## VII. 남은 課題

이번 事件은 精油社와 一般石油類代理店과의

관계만을 是正對象으로 삼았다. 가스部門 및 代理店과 注油所間의 去來 等에도 유사한 내용의 公正去來法抵觸事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같은 취지로 自律 是正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石油 또는 가스代理店이 지역에 따라서는 市場이 좁아서 自然的 独占狀態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狀態에 있는 代理店은 注油所·小売店에 대해서 平等한 去來條件으로 去來를 개방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去來拒絶(지정고시 제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注油所·小売店의 경우에 풀·사인과 다른 내용의 製品을 파는 행위는 精油社·代理店과의 契約上 義務와는 별도로 不當表示(지정고시 제 7호)가 될 위험성이 있음을 再言해 두고 싶다.

이와같이 石油流通業界의 公正去來秩序의 定着을 위해서는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으므로 業界의 自律의 努力과 協助를 당부드리고 싶다.

(本稿의 內容은 經濟企劃院 또는 公正去來室의 公式的 見解나 立場은 아니며, 筆者 個人的 所見과 所感을 쓴 것입니다: 筆者註) \*

□ 海外石油動向 □

### OPEC 實質油價 1986年까지 安定勢 維持할 듯

向後 인플레이 增加率을 감안한 OPEC의 實質油價는 1986年까지 安定勢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下落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 石油相은 28日 英國의 헤랄드·트리뷴과 오일·데일리지가 공동주최한 1980年代의 油價展望에 관한 2日間의 회의에서 자신은 OPEC油價가 금년 말까지 單一化가 이루어진다면 그 價格은 1982년말까지는 변동되지 않는 한편 그후 1986年까지 3년간의 유가는 인플레이 上昇率 水準이나 그 折半水準의 上昇勢를 보일 것으로 내다 보았다.

야마니 石油相은 이렇게 될 경우 1986년부터는 세계석유수요가 消費國들의 소비절약과 石油의 代替 使用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며 石油輸出國들은 그들의 實質油價가 인플레이 上昇率보다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는 또 今年 두차례에 걸친 제네바 OPEC 會議에서 自國產油價의 引上問題를 거절하여 왔던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余他 OPEC 會員國들이 그들의 油價를 인하시키는데 同意만 한다면

油價妥協을 위한 사우디의 문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OPEC의 原油供給量 문제에 언급, 이 問題는 金利를 비롯한 달러價值, 世界經濟여건에 따라 변화할 소지는 있지만 現在 2,000萬b/d수준인 OPEC의 原油供給量은 1982年에도 그 정도의 水準을 유지하거나 약간 增加勢를 보일 것으로 내다 보았다.

한편, 先進諸國에서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야마니 石油相의 의견에 同調하면서 1986年까지 또다른 형태의 油價 및 供給混亂사태만 피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해 야만 했던 石油依存度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IEA의 高位經濟學者인 허만氏는 80년대 石油市場展望은 향후 몇년간 케르샤灣의 주요 產油國에서 또 다른 混亂事態만 없다면 야마니 石油相의 의견과 부합되나 낮은 經濟成長率과 高金利, 그리고 불확실한 에너지 需要 및 가격전망은 추진중에 있는 新發電所建設, LNG設備, 合成燃料工場建設 等에 對한 投資決定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